

의망이 샘솟는 신안

여객선 「플로피아2호」
운항관리규정

【송도-병풍】



 **신 안 군**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제3조(안전관리 목표)	2
제4조(안전관리 방침)	2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3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3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3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3
제8조(안전관리조직)	4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4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4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5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6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7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7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7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8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8
제15조(채용·배승관리)	8
제16조(인수인계)	8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9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9
제18조(항해업무)	9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13
제20조(통신업무)	14
제21조(여객업무)	15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16
제23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17
제24조(정박 및 계류)	17
제25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17
제8장 비상상황 대응	18
제26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18
제27조(비상대응)	18
제28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20
제29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21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22
제30조(선박의 안전점검)	22
제31조(육상설비 점검)	22
제32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22
제33조(유류관리)	23
제10장 자료관리	24
제34조(문서관리)	24
제35조(문서생산 등)	24
제36조(문서관리대장)	24
제37조(문서의 폐기)	24
제38조(해도관리)	25
제39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25
제40조(여객선 안전정보공개)	25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26
제41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26
제42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26
제43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26
제44조(규정의 적용)	27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6]	29~64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조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운항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차량적재도”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부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인한 차량의 배치 및 적재방법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한다.
13.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화물의 적재한도”란 「선박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제12호의 차량적재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내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말하며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6.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
2.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3. 고객만족
4. 여객 및 화물보호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 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대 고객 서비스 강화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확인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7.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061)240-8164 061)240-4080

나. 관할구역

- 전 항로 / 전 구간 (안전관리 총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전 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인 지원을 하며, 여객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

2. 지점(없음)

가. 기본사항

- 송도, 병풍, 가룡, 신월매포소 매포실시

나. 관할구역

- 전 항로 / 전 구간

다.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

- 가·종점항 「지도 송도항/병풍도 보기항」 및 전 항로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 본사(대표이사)명을 받고, 선원, 각 매포소(매포원 포함), 선착장 시설 등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6」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직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5.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 6.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 7.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8.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9.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 10.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 11.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 1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기타 비상

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13.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게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4.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한다.

15.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②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석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며, 여객선 안전운항 시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기타 비상 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3.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게 대해 교육·비상훈련을 실시한다.

4.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이를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운항관리규정 변경·신청 등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6.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임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7.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 이행 및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8.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9.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② 화물담당자는 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물의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업무 총괄
2. 화물의 적재에 관한 선장·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3. 육상작업원에 대한 관리업무 총괄
4. 화물선적 작업완료 시 선장에게 화물목록 제출

③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및 선용품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3.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 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 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는다.
-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갑판원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배승 관리)

-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 및 배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요함.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필요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포함되어야한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 기관 구명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플로피아2호」의 제원 및 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일반선	2020.03.13	271톤	588kW×2대
선박치수(m)	항해속력	항로	항해구역
42.23×9.00×2.50	10.0노트	송도/병풍	평수

② 여객선 「플로피아2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257명(여객 252명, 선원 5명)
2. 승무정원 : 3명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

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풍우밀 등 풍우밀설비 이상 유무
4. 여객 안전 확보 상태
5.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은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

항로	출발지 (기점)	기항지	종착지 (종점)	항해 속력	항해거리 (마일)	운항 시간
송도/병풍	송도	병풍-마산-선도-고이-신월	신월	8	10.7	1:20
가룡/가룡	가룡	가룡-매화(기점)-마산-선도-고이-신월	가룡	8	12.5	1:35
가룡/선도	가룡		선도	8	4.7	0:40

※ 접안지 부잔교 부재로 인하여 가룡/선도 항로만 운항함.

2.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 위치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거리 (마일)	비고
송도	송도↔병풍(3.5)↔마산(3.4)↔선도(1.9) ↔고이(1.5)↔신월(0.4)	10.7	
가룡	가룡↔매화(기점)(2.7)↔마산(3.5)↔선도(1.9) ↔고이(1.5)↔신월(0.4)↔가룡(2.5)	12.5	
가룡	가룡↔선도(4.7)	4.7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1) 암초 : 고이, 선도 부근

2) 간출암 : 병풍도 북서단 0.3마일(34-59-20N, 126-12-29E)

선도 남쪽(34-57-55N, 126-15-00E),(34-57-57N, 126-15-05E)

나. 사격 및 훈련구역

- 없음

다.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항로 전역 양식장 산재 및 협수로

라. 관제구역·통항분리구역·특정해역

- 없음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가. 각 기항지 입·출항 시

연번	보고지점	위도	경도	보고처
1	송도항	N35-02.58	E126-12.20	목포운항관리센터
2	병풍	N34-59.12	E126-12.85	
3	가룡	N34-55.21	E126-18.30	
4	고이(밥섬)	N34-55.90	E126-17.90	
5	매화(기섬)	N34-54.80	E126-15.32	
6	마산	N34-57.2	E126-15.0	
7	선도	N34-58.5	E126-16.2	
8	고이	N34-57.6	E126-17.4	
9	신월	N34-57.6	E126-17.8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구 간
가. 항구를 출입할 때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 가. 태풍 내습 시 : 가룡항, 목포북항 등 선장이 지정한 안전한 해역
 - 나. 기상 악화 시 : 가룡항, 목포북항 등 선장이 지정한 안전한 해역
8. 일시적으로 운항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선박명칭	교행시간	교행위치
-	-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한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속	파고	가시거리
최대 12m/s 이상	최대 2.0m 이상	1km 이내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전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 2.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 3.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붙임6]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취급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조타장치
- 2. 항해장비
-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 4. 풍우밀 등 이상 유무
-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항로도에 표시된 위치 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종류	보고시기	보고내용
출항보고	출항 후 10분 이내	1. 출항시간, 출항항 및 목적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 여부 4.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입항보고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 유무
위치보고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지점 도착 시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출항 또는 운항 중지 보고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유
기타사항 보 고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한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 전달받은 시간 2. 사실 내용
	중간기항지에서 여객이 승하선할 경우 등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 2. 중간기항지 승선 여객수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의 여객을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 수 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 수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현지 기상 및 해상상태와 위치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1. 사실 내용과 위치 2. 구조방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목포항 해상공통관제센터, 진·출입시간 보고 시에는 항계 내에서는 “채널14”, 항계 외에서는 “채널16”으로 교신한다.
-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 ① 회사는 대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앞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 ⑦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⑩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항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송한다.
- ⑪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 ⑫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 「머리조심」 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할 때에는 여객 승선 중 또는 승선 완료 직후에 모니터,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시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객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한국어 방송에 이어서 외국어로 방송한다.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의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여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2.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3. 비상대피로 파악 등 비상 시 행동요령
4. 항행시간, 해상상태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방법
6. 해양긴급신고 번호 119
7.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
8.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제23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판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5. 선박폐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5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화기작업
4. 여객승선구역 작업
5.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6.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6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7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붙임3], 여객행동요령[붙임10]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조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비상시 신호체계[붙임8] 및 여객의 행동요령 참고 [붙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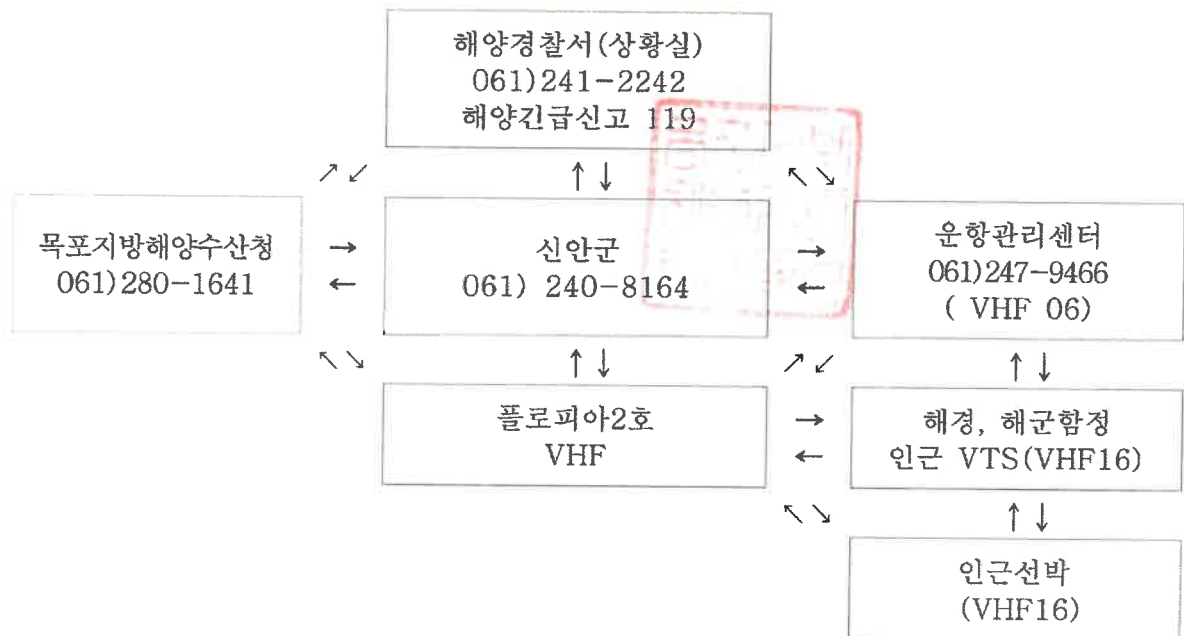
「비상상황발생시 대피장소」

비상상황	퇴선
1구역	1구역
상갑판 선미방향 (갑판원 담당)	상갑판 선미방향 (갑판원 담당)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비상조직도 및 임무】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압해 중앙의원(전화번호 061-246-8004)

나. 전남 중앙병원(전화번호 061-260-3000)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 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필요시 및 요청시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28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8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29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교관 요원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기	대상자	
해상인명 안전훈련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 선원	
	소방훈련	10일	모든 선원	
	퇴선훈련	10일	모든 선원	
해양사고 대응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3개월	모든 선원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6개월	모든 선원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6개월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모든 선원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5]과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0조(선박의 안전점검)

-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호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1]과 같다.

제31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2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붙임7]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⑦ 기적, 종 등의 비치상태 및 항해등의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를 개선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3조(유류 관리)

-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류 보급선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4조(문서관리)

-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선장 및 기관장으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문서생산 등)

-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6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3]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의 폐기)

-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해도관리)

-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 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상을 말한다)
-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1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4]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3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

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의2호가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정의 적용)

- ① 이 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선종별·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목차】

- [붙임 1] 항로도
- [붙임 2] 일반배치도
- [붙임 3] 구명·소화설비 배치도 및 비상탈출도
- [붙임 4]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붙임 5] 선원법정교육 목록
- [붙임 6]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붙임 7] 선박계획정비표
- [붙임 8] 비상부서 배치표
- [붙임 9]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붙임 10]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붙임 11]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 [붙임 12] 선박 문서 보존연한
- [붙임 13] 문서관리대장
- [붙임 14] 내부심사절차서
- [붙임 15]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붙임 16] 안전관리조직도



[붙임1] 항로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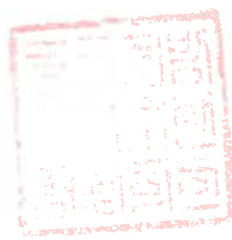
□플로피아2호

(송도→신월)

※ 접안지 부잔교 부재로 인하여 가룡/선도 항로만 운항함



※ 접안지 부잔교 부재로 인하여 가룡/선도 항로만 운항함.



(가룡→선도)

※ 접안지 부잔교 부재로 인하여 가룡/선도 항로만 운항함.



[illegible]

[붙임 3] 구명·소화설비 배치도 및 비상탈출도



SYMBOL	DESCRIPTION		PLACE						TOTAL QTY
	ITEM	CAPACITY	S.G. RM	ENG. RM	VOID SPACE	UPP. DK	PASS. DK	NAV. BRI. DK	
	GENERAL SERVICE & FIRE PUMP 일반 및 소화 펌프	30 m³/h x 40m x 7.5kW		1					1
	BILGE & GENERAL SERVICE PUMP 발지 및 일반 펌프	30 m³/h x 40m x 7.5kW		1					1
	FIRE MAIN WITH FIRE VALVE 소화관	40A		2		2	2		6
	HOSE BOX W/SPRAY & JET FIRE NOZZLE 소화 호스 상자 및 호스와 노즐	15M		2		2	2		6
	PORTABLE CO2 FIRE EXTINGUISHER 휴대식 이산화탄소 소화기	6.8kg		2				1	3
	PORTABLE DRY POWDER EXTINGUISHER 휴대식 분말 소화기	6.5kg	1	4		3	2		10
	WHEELED FOAM EXTINGUISHER(45L) 이륜식 포말 소화기	45L		1					1
	SPARE CHARGE FOR ALL PORTABLE EXTINGUISHER 여백 소화장	-	소화기 출수의 25%이상 비치 할 것 여백 후단식 CO2 소화기 1개 비치 할 것						
	LOCKER WITH FIREMAN'S OUTFIT 소방복 보관함	-						1	1
	FIRE ALARM PANEL 화재 경보 판넬	-						1	1
	EMERGENCY STOP PUSH BUTTON 비상 경보 누름 버튼	-				2		1	3
	EMERGENCY STOP PUSH BUTTON OF P.O. PUMPS & VENT. FAN FOR E/R 비상 정지 누름 버튼 (기동부)	-				1			1
	SMOKE DETECTOR 연기 감지기	-	1	2					3
	HEAT DETECTOR 열 감지기	-		2					2
	BCU FIRE ALARM 화재 경보기(벽)	-		1		4	3		9
	MANUAL OPERATED CALL POINT 수동 작동형 호출점	-		2					3

[붙임 4]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별표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위험물	수량 및 질량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연화(완구용인 것)	1kg
	도화선	3kg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부식성 물질	축전지	2개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독물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인화성 액체류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도료, 등유	20kg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산화성 물질류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가연성 물질류	셀룰로이드	1kg
	안전성냥, 약품류	3kg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5kg

※비고:1)수량 또는 질량은 1인당 휴대기준을 말하고, 질량은 용기 및 포장의 질량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 [별표1] ‘위험물목록’의 적재격리요건란에 적재방법D’ 및 ‘E’로 분류되는 위험물(휘발유 등), 화약류의 경우 적재방법 ‘03’, ‘04’ 및 ‘05’로 분류되는 위험물(기준 제16조에서 정하는 화약류 제외)은 여객선 적재가 금지된 위험물이므로 여객선에 적재할수 없음.”

[붙임 5]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육명	교육대상자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기간	관련법령
기초안전교육	여객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	4.5일/재교육 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여객선 선박직원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응급처치담당자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담당자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여객선 선박직원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교육	해양오염방기관리인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4급항해사 이상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레이더 / 2일	없음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최초로 내항여객선 승선하려는 자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리더십및관리 기술직무교육	선장, 1항사, 기관장, 1기사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여객선 부원	기초(재) / 2(1)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여객선 선박직원, 여객선안전관리선원	상급(재) / 4(2)일	5년	
의료관리자 교육	의료관리자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의료관리자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	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선장, 항해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없음	
연안선 직무교육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의 선장, 기관장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 직무교육	여객선 선박직원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비고

-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나. 기초안전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육을 면제한다.
-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기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월1일 이전에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항해선 또는 내항여객선에서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붙임 6]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별지제2호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년 월 일 시 분 출항									
선 명					선박번호				
항로 및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시간 분		
홀 수	선수 : m, 중앙 : m, 선미 : m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 승선자	명		
실제 승선인원	(①+②+③+④+⑤)명		여객	(①+②+③)명 대인 ①명 소인 ②명 유아 ③명	선원	④명	임시 승선자	⑤명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예	아니오		
항해준비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승무원중서상 법정승무원이 승선하여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	☐		
감 항 성	선체상태, 만재홀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주기 및 발전기의 연료유공급탱크 충전을 확인했는가?					☐	☐		
서 류	여객명부, 화물목록 등 본선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는가?					☐	☐		
시 운 전	선교 항해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레이더, 컴퍼스, 음향측심기, 전자해도시스템 등)					☐	☐		
	조타기 및 각종 지시기,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		
	통신설비 및 선내방송시설이 정상 작동하는가?					☐	☐		
	계선·양묘설비 등 갑판설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	☐		
	기적, 항해등 등 항해보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		
	주기 및 발전기, 기타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		
보급/수리	필요한 연료유 및 기기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객실 등 여객구역에 비품이 비치되고, 여객구역이 청결/안전한가?					☐	☐		
고박/적재	기관실내 이동물이 고정되었는가?					☐	☐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되었는가?					☐	☐		
	선내 위험화물이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되었는가?					☐	☐		
소화/구명	선내 소화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안전/보안 등	선원이 알코올 또는 마약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		
	육상작업원,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기관실내 화기/발화물질이 제거되었는가?					☐	☐		
	기관실 및 타기실내 누수, 누유 여부 및 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결합사항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선장 등과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 7] 선박계획정비표

선박계획정비표 (9-1)

○ (갑판부) 일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illegible]

선박계획정비표 (9-2)

○ (기관부) 일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illegible]

선박계획정비표 (9-3)

○ (기관부) 주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illegible]

선박계획정비표 (9-5)

○ (갑판부-2) 월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장 비 명	점 검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객실의자	1	덮개 청결상태 확인												
	2	의자 고정상태 확인												
화장실	1	해수 흡입구 상태 확인												
	2	Float Valve 상태 확인												
	3	푸쉬버튼 상태 확인												
	4	출입문 핸들 및 잠금장치 상태 확인												
객실 출입문	1	손잡이 상태 확인												
	2	잠금장치 상태 확인												
	3	수밀고무패킹 상태확인												
객실현창	1	Rivet 이완상태 확인												
	2	균열개소 확인												
비상등	1	비상등 식별표시 여부 확인												
	2	Lamp & Cover 파손 확인												
	3	Lamp 밝기 확인												
	4	작동상태 확인												
폐기물 기록부	1	작성상태 확인												
	2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선박계획정비표 (9-6)

○ (기관부) 월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illegible]

선박계획정비표 (9-7)

○ (갑판부) 분기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장 비 명	점	검	항	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구명조끼	1	청결	건조상태	확인				
	2	호각	및 조끼등	상태 확인				
	3	비치	수량	확인				
	4	손상여부	확인					
구명부환	1	Line	상태	확인				
	2	비치수량	확인					
	3	손상여부	확인					
신 호 탄	1	로켓낙하산신호	및 자기발연신호	보관상태 확인				
자기점화등	1	보관상태	확인					
	2	배터리	상태	확인				
	3	램프	상태	확인				
소 화 전	1	밸브	개폐상태	확인				
	2	호스	및 만능노즐	상태 확인				
	3	Hose Connector	접속	확인				
계선로프	1	손상여부	확인					
	2	마모여부	확인					
	3	보관상태	확인					

선박계획정비표 (9-8)

○ (기관부) 분기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장 비 명	점 검 항 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감속기	1	윤활유 교환 및 Filter 청소				
댐퍼	1	엔진룸 Fire Damper 및 Limit Switch & Leaching Coil 작동 확인				
엔진룸 흡입팬	1	흡입 덕트 청소				
위생수 펌프	1	그랜드패킹 & Oil 교환				
각 분전반 및 펌프	1	절연저항 Check				
배터리 충전기	1	기능 Test				
조명	1	객실조명 상태 및 불량품 교환				

[붙임 8] 비상부서 배치표

▷ 선 명 : 플로피아2호

상황		소화폭발	퇴 선	해양오염	인명구조	비상조타	충돌좌초	기관고장
구분	직책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선 교	선장	총지휘, 대외업무 여객안내방송 조난통신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중요서류 반출 여객안내방송 조난통신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조난통신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기 관 실	기관장	소화펌프작동, 전원및 통풍기차단 소화기 휴대 및 소화작업, 기관실 외 화재현장 지원	기관운전, 기관일지 휴대	현장지휘 및 방제작업, 갑판기관실 개구 폐쇄	구조작업, 응급처치 및 의료지원	고장 시 교대 운전	기관실 지휘, 수라침수 방제작업	작업반장
현 장	갑판원	현장지휘 소화호스제1 살수자 방화복착용 휴대용소화기 조작 소화구조작업 방화복	현장보좌 여객유도 신호탄발사 및 투하 구명부환해상 투하 여객유도 구명조끼분배 및 착용안내 비상탈출구 안내	현장 방제작업 방제자재 운반 및 방제작업	현장 지휘, 익수자 위치확인 및 구조작업, 환자이송 부상자치료 구조작업 구명부환 투하		현장 지휘, 손상현황 파악, 매트,모포,지주운반, 수라침수 방제작업, 투묘준비,	선부부지휘 (필요시 투묘) 투묘준비, 수라작업 지원
비상신호		비상배치신호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항계내 화재신호 : (장음 5회 반복) 퇴 선 신 호 : (연속음 약30초 이상)						
비 고		전 승무원 소화현장 집결시 소화기 휴대	전 승무원 구명조끼, 안전모 착용		발견즉시 구명부환 투하, 선내 경보			

※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비상상황에서 선장 유고 시 현장 지휘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예) 선장 → 기관장 → 갑판원

[붙임 9]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훈 련 명	시 행 주 기
선내 숙지교육	수시
소화 및 퇴선 훈련	매 10일
기름유출대처 훈련	매월
비상조타 훈련	매 3개월
추진기관 고장 훈련	
충돌·좌초 및 전복 훈련	
인명구조 훈련(해상추락,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매 6개월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비상상황 유형

구분	비상상황 유형	보 고 기 준
1.	소화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퇴선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3.	비상조타	선박 조타기의 고장 시 교대운전 한다.
4.	인명구조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5.	기름유출대처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및 유출된 기름의 수거
6.	충돌·좌초 및 전복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의 확인 및 침수 방지와 전복으로 인한 비상대응 훈련
7.	추진기관 고장	신속한 보고와 효과적인 선조치를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상투묘
※ 통신유지 사항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선원 3명)

1) 소화훈련요령

- 화재사실을 인지한 최초 발견자는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 이라고 소리를 질러(또는 비상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며,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최대 활용 등 화재초기 조치를 한다.
- 선장은 여객 동요방지를 위해 화재상황을 간략하게 방송 후 화재현장이 풍하쪽으로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갑판원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필요시 자장식호흡구는 갑판원이 착용]
- 현장에 투입한 갑판원은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어려울 시 선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소화기 등으로 화재진압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 상황식별 : 화재종류, 화재위치, 현재 선위, 기상조건 등 파악(풍향, 풍속, 파고, 조류 등)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선박 확인
- 또한, 선장은 VHF,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화재발생 현황 및 본선조치사항, 구조 필요성 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
- 기관장은 소화범위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소화작업에 임한다.
[화재현장의 전원차단, 통풍기차단 및 적절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그리고 인접 격벽에 살수(화재확산 방지)]
- 갑판원은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하고 화재종류에 따라 살수 등 조치한다.
- 선장으로부터 화재상황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지원요청에 대한 관련기관에 보고 및 소방선 수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진화가 완료되면 선장은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한 후 갑판원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선장에게 보고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2) 퇴선훈련요령

- 선장은 본선의 상황에서 퇴선 결정을 하면 비상배치신호(단음7회후 장음1회) 및 여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현 위치에서 침착하게 대기 하면서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 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선장은 퇴선이 결정되면 VHF,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본선의 승선인원 및 위치, 퇴선이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조난신호를 작동하여야한다.
- 선장으로부터 퇴선의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관할관청(지방청, 해양긴급신고119)에 보고하고 구조선의 파견여부 등 구조수단을 검토 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선박이 침몰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연료탱크 주입구, 배출구를 폐쇄토록 조치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퇴선신호 및 방송을 청취한 기관장 및 갑판원은 휴대품을 들고 여객이 질서 있게 퇴선 할 수 있도록 퇴선위치에 정렬하게 한다(구명부기, 구명부환이 위치한 곳)
 - 이때, 구명부기 등의 개수가 많을 경우 되도록이면 여객 중 해상경험자를 선출 배치
- 퇴선준비가 완료되면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린다. (퇴선신호 연속음 약30초)
- 기상상태가 좋을 경우 구명부기 등을 서로 묶어 통제하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원이 적어 여객을 통제하기 어려울 경우)
-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퇴선사실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 가능한 구조수단을 결정하고 본선 선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본선 여객 및 기관장, 갑판원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 및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퇴선 해제” 라는 말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하며,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3) 비상조타훈련

※ 플로피아2호의 경우, 펌프A, B가 있다.

펌프A 작동 불가시, 자동으로 펌프B로 전환되어 작동이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인명구조훈련요령

-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자는 큰소리로 「OO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를 외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프로펠러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진 현으로 전타함과 아울러 기관을 정지시킨다.
-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을 던져 주며,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자기점화등, 주간에는 자기 발연 신호를 매달아 함께 던진다. 기타 현장 부근에 있는 나무 등의 부유물을 던질 수도 있다.
- 선장은 선내 경보를 울리고, 필요하다면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 구조반(갑판원)은 가능한 한 높은 장소에서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조선)할 방법을 빨리 결정하고 또한 실행하여야 한다.
- 선박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국제신호기 "O"기를 올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음을 알린다.
- 필요하다면 긴급통신을 송신하여 타 선박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선체와 떨어져서 구명부환을 잡고 그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구명조끼 호각, 기타 유효한 신호 방법으로 위치 표시를 계속한다.
- 구조반은 익수자와 본선간의 상대방위와 거리를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당시의 기상상황 및 익수자의 식별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적절한 조선으로 익수자를 본선의 풍하 측에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구조반은 필요시 탐조등을 준비하고 익수자를 비춘다.
- 선장은 적절한 구조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반에게 지시한다.
- 익수자 위치·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할시, 실종시간을 추정하여 항로를 회항하면서 익수자를 탐색한다.
- 선장은 익수자 발생 시 관계기관(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보고한다.
- 익수자 구조 후 의식불명으로 긴급 환자 이송 등 육상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익수자의 상태 및 본선 조치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건강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배치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 결과를 평가한다.

5) 기름유출 대처 훈련

- 본선 급유 중 급유선의 송유호스 파열로 기름 유출
- 최초 발견자는 “XX장소에 기름유출 발생”을 크게 외친다. 선장은 즉시 급유선에 연락하여 급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비상신호와 함께 오염 방제 부서 배치 발령(비상벨 단음7회, 장음1회)을 한다.
- 선장은 기관장에게 본선에 비치된 방제 자재를 사용하여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 후 유출 원인과 유출량을 확인하고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 기관장은 방제작업을 지휘, 갑판상의 유출유 방제작업에 임한다.
- 선장은 현재의 상황(유출량 및 확산정도)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지원을 요청 하고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선장은 기름유출 구역을 포함한 본선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여객이 승선해 있을 경우 여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유도 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지원요청을 한다.
-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위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현장을 마무리 한 후 상황을 종료한다.
-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 발생시 사고관련 자료를 작성, 사고보고서를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선명, 사고유형, 사고일시, 장소, 사고 개요, 추정 사고 원인, 확산 범위, 본선 조치 사항, 육상지원 요청 사항, 기타 참고 사항)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6) 추진기관 고장 훈련

- 항해 중 조타실의 엔진 오퍼레이팅 인디케이터에 알람이 울리며 엔진이 정지
- 선장은 기관장에게 기관고장 원인과 수리 가능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필요 시 비상투묘를 고려한다.
- 기관장은 본선에 부속품이 있으므로 자체수리가 가능하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즉시 비상부서배치신호를 발령하고 운전부자유 형상물 게시(즉, 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 및 VHF로 인근 선박에게 주위환기 방송을 실시하며 침로유지를 하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선내 방송으로 위 사실을 여객에게 알리고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한다.
- 자체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선장은 비상 투묘 혹은 임의 좌주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여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예선을 요청하며 선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자체수리가 가능하다고 기관장에게 보고를 받고 주위 해상교통을 파악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DRIFTING하기 시작한다.
- 선장은 기관장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고 엔진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엔진고장 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하고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안내방송을 통하여 알리며 “추진력 상실 부서배치 해제” 라는 방송과 함께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7) 충돌·좌초 및 전복사고 훈련

(충돌시)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붙어 발령을 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상대선박의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실시 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인해 침수 발생시 썰기 등으로 방수 조치를 한 후 퇴선 여부를 판단한다.
- 피해정도가 적고 자력으로 회항이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항구로 회항한다.
- 선장은 필요시 예인 등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좌초시)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붙여 발령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침수 발생 시 썰기 등으로 방수 조치한다.
- 침수가 없고 자력으로 이초가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자력 이초하여 가까운 항구로 가서 정박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 본선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선장은 퇴선 혹은 예인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는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즉각 위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전복시)

- 선장은 전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질서를 유지하여 정해진 소집 장소에 집합하게 한다.
- 선장은 승무원에게 구명부기 등 구명설비를 투하하여 퇴선을 준비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 및 인근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후 퇴선을 명령한다.
- 구조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승무원 및 여객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들은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퇴선을 유도한다.
- 여객전원이 구명부기 및 구명설비 등에 안전하게 퇴선한 것을 확인한 승무원들은 퇴선 시 소지해야 하는 지참물을 소지하고 마지막으로 퇴선한다.
- 선장은 훈련 종료 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붙임 10]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신호 : ● ● ● ● ● ●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항계내 화재신호 : ■ ■ ■ ■ ■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 (연속음 약30초 이상)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 11]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연번	장비·시설	수량	설치장소
항해	1	RADAR	1개	조타실
	2	DGPS PLOTTER	1개	조타실
	3	선수방위전달장치	1개	조타실
	4	마그네틱 컴퍼스	1개	조타실
	5	음향 측심기 (ECHO SOUNDER)	1개	조타실
	6	AIS	1개	조타실
기관	1	MAIN ENGINE	4기	기관실
	2	GENERATOR	4기	기관실
	3	비상축전지(2개1조)	4개	W/H TOP
통신	1	VHF/DSC 무선 전화기	1개	조타실
	2	TWO-WAY	2개	조타실
	3	선내전화장치	1개	조타실
구명	1	구명부환	2개	NAV.BRI DECK
	2	구명부환 WITH LINE	2개	NAV.BRI DECK
	3	구명조끼(성인용)	283개	조타실:5, NO.1 PASS. RM:174 NO.2 PASS. RM:78, PASS DECK 외갑판:26
	4	구명조끼(어린이용)	26개	NO.1 PASS. RM:18, NO.2 PASS. RM:8,
	5	구명조끼(유아용)	7개	NO.1 PASS. RM:5, NO.2 PASS. RM:2,
	6	구명부기(12인용)	11개	NAV.BRI DECK
	7	흑구	3개	조타실
	8	자기점화등	2개	조타실
	9	자기발연 신호탄	1개	조타실
	10	로켓낙하산 신호탄	2개	조타실
	11	AED 자동제세동기	1개	NO.2 PASS RM
소화	1	휴대식 이산화탄소 소화기(6.8KG)	3개	ENG RM:2 ,조타실:1
	2	휴대식 분말 소화기(6.5kg)	10개	NAV DECK:1, NO.1 PASSRM:3, NO.2 PASSRM:2,ENG RM:4,타기실 : 1
	3	이동식 포말 소화기(45L)	1개	ENG RM
	4	소화전	6개	
	5	소방원장구	1SET	NAV.BRI DECK
	6	화재탐지기		
	7	소화펌프	1	기관실
기타	구명 및 소화장비 현황는 별첨된 관련 도면에 상세히 표기 되어 있음			

[붙임 12]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관련 문서
영구 보존기록	○국적증서 ○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운항관리규정 관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5년 보존기록	○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선박검사 관계 ○선박점검 관계 ○해양오염방지 관계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3년 보존기록	○선원관리 관계 ○선원자격 관계 ○선원교육 관계
1년 보존기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붙임 13] 문서관리대장

☐ 도면 및 서류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운항관리규정	영구	선장
2	여객선 이력관리장부	영구	선장
3	복원성 자료	영구	선장
4	항해일지	영구	선장
5	기관일지	영구	선장
6	기름 기록일지	영구	선장
7	선박계획 정비 기록부	영구	선장
8	출항전 점검보고서	1년	선장
9	건강진단서	1년	선장

☐ 증서목록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선박국적증서	영구	선장
2	선박검사증서	영구	선장
3	승무정원증서	영구	선장
4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영구	선장
5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영구	선장
6	무선국허가증	영구	선장
7	해기사면허증	영구	선장
8	보험가입증서	영구	선장
9	승무원명부	영구	선장

[붙임 14]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담당 이상인 자
-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안전관리책임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 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5]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부심사부적합사항보고서		부적합번호	(부)
		발행일자	
☐ 내부심사 ☐ 고객불만사항 ☐ 자체발행		대상부서	
※ 부적합사항		☐ 중부적합 ☐ 경부적합 ☐ 권고사항	
해당부서장:	인	심사자(발행자)	심사팀장:
※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			조치기한:
시정조치부서	검토(심사)일		검토(심사)자
※ 시정조치내용	시정조치일자		시정조치부서장
※ 시정조치확인결과: 현지에서 교육 실시 완료함		☐ 종결승인 ☐ 재조치 ☐ 조건부승인	
확인일자		확인(승인)자	재조치기한
※ 유효성/효과		종결일자:	

내부심사점검표			심사대상		
			심사종류	년도(□정기 □특별)	
심사목적	소방교육, 실기		심사기간		
운항관리규정 항목	부적합	권고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책임심사자:		
2.안전관리 조직			-.피심사자: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4.운항기준도					
5.선장의 보고사항			일반심사자		
6.위험물 취급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부적합(총 건)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구 분	중부적합(○)	건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경부적합(△)	건
12.문서 및 자료관리				권고사항	건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원 인 별 분 석	절차내용 미흡	건
14.내부심사				절차 불이행	건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평가				업무이해 미흡	건
합 계				시정조치 미흡	건
				증거(기록)미흡	건
			지원 미흡	건	
심사결과 요약 및 분석					
유첨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작 성 일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붙임 16] 안전관리조직도

